

영주시 일용직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

영주시 일용직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주시 일용직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를 “영주시에 근무하는 일용직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일용직 자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년간 300일 이상 고용되는 일용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의 자녀로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은 제외한다

제3조 중 “실·과·소장, 읍·면·동장”을 “의회사무국장, 본청 실·과장, 소속 행정기관장 및 읍·면·동장(이하 “산하 기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선발함에 있어서 그 배정비율을 중학생 5할, 고등학생 5 할로 하고 고등학교는 실업계에 우선 배정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배정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도 개시 1월이내에 확정한다”로 한다.

제5조 중 “20명이내로 하되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이내로 한다”를 “20명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매분기 별로”를 “공납금 납기별로 매 공납금 납기내에”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중 “실·과·소장, 읍·면·동장”을 “산하 기관장”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이 조례에 의거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영주시일용직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일용직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일용직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영주시에 근무하는 일용직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일용직 자녀.....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300일 이상 고용되는 일용직으로 2년 이상 세직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야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제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또는 예능이 뛰어난 자(이하 "특기자"라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내간 300일 이상 고용되는 일용직으로 2년 이상 세직한 자의 자녀로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은 제외한다
제3조(추천) 실·과·소장, 읍·면·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3조(추천) 의회사무국장, 본청 실·과장, 소속 행정기관장 및 읍·면·동장(이하 "산하 기관장"이라 한다).....
제4조(선발)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함에 있어서 그 배정비율을 중학생 5할, 고등학생 5할로 하고 고등학교는 실업계에 우선 배정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배정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제4조(선발) ①.....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도 개시 1월이내에 확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p>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 선발인원은 <u>20명 이내로 하되 중학생 10명, 고등학 생 10명이내로 한다.</u></p>	<p>제5조(장학생의 정원)<u>20명 이내로 한다.</u></p>
<p>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u>매분기</u> <u>별로</u> 지급한다.</p> <p>② < 생 략 ></p>	<p>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u>공납금 납기</u> <u>별로 매 공납금 납기내에</u>.....</p> <p>② < 현행과 같음 ></p>
<p>제8조(지급의 정지) ① < 생 략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자가 퇴직하였을 때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u>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u>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p>② <u>실·파·소장, 읍·면·동장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8조(지급의 정지) ① < 현행과 같음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p>3. < 삭 제 ></p> <p>4. < 삭 제 ></p> <p>② <u>산하 기관장</u>.....</p>
<p>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 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자기의 현금 으로 한다.</p>	<p>< 삭 제 ></p>
<p>제10조(시행규칙) < 생 략 ></p>	<p>제9조(시행규칙) < 현행과 같음 ></p>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의 안

- 의안번호 : 제108호
- 의 안 명 : 영주시일용직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 해당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2. 개정이유

영주시일용직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장학생 자격 및 선발기준을 완화하고 선발인원에 있어 중·고등학생 수의 비율을 없애는 등 시행상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지급목적중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를 “일용직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일용직 자녀”로 함.(안 제1조)
- 나. 장학생의 자격 및 선발기준을 완화함.(안 제2조 및 제4조)
- 다. 장학생은 “20명이내에서 중·고등학생 각 10명 이내로 선발”하던 것을 “20명 이내로 선발”하도록 함(안 제5호)
- 라. 장학금은 “매 분기별로 지급”하던 것을 “공납금 납기별로 매 공납금 납기내에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특히 불량한 때 ”와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를 삭제함(안 제8조)
- 바. 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

4. 검토의견

영주시 일용직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목적) :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사정으로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자”를 “일용직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높이기 위함으로 수정하고
- 안 제2조 및 제4조(장학생의 자격 및 선발기준 완화)
 - 장학생은 년간 300일이상 고용되는 일용직으로 2년이상 재직한 자의 자녀로 완화(환경미화원 제외)
 - 장학생 선발은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도 개시 1월이내에 확정함.
- 안 제3조(추천) : 장학생 추천은 실·과·소장, 읍·면·동장에서 의회사무국장을 추가하였음.
- 안 제5조(장학생의 정원) : 선발인원은 20명이내로 하되 중·고등학생 각 10명이내로 구분하여 선발하든 것을, 중·고등학생 구분없이 20명이내로 선발하도록 하였고
- 안 제7조제1항(장학금의 지급) : 장학금은 “매 분기별로 지급”을 “공납금 납기별로 매 공납금 납기내”에 지급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8조(지급정지) : 지급정지는 보호자가 퇴직하였을 때나, 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외의 항목은 삭제하고
- 안 제9조(장학금 특별회계 설치) : 장학금특별회계 설치는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던 조항으로 삭제함.

본 조례의 개정(안)을 검토한바

- 영주시에 근무하는 일용직에 대하여 근무의욕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장학금지급 목적을 완화하고 중·고등학생의 비율을 없애는 등
-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조례(안)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00. 4.

총무전문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